

# 2015년도 광주소방서 종합감사 결과

## 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3. 23.~ 3. 27.(5일간)
- 감사분야 : 2012년 10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
- 감사결과

감사결과 (건, 명, 천원)				처 분 계 획								
				행정상(건)		신분상(명)			재정상(천원)			
총계	행정상	신분상	재정상	시정	주의	징계	훈계	주의	회수	벌금	과태료	
13	13	28 (11건)	10,520 (2건)	4	9	-	8	20	20	10,000	500	

## II 주요 지적사항

### ○ (인사·행정) 외부강의 대가와 출장여비 중복 수령

- 외부강의·회의 등 출장은 사전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, 반드시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가하며(개인적 이메일, 전화 등 금지), 기준을 초과하는 강의료는 받아서는 아니 되고, 대가 등 여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함에도, 현장대응단 소속 직원이 00에 심폐소생술 교육 후 강의대가 150,000원을 받고도 출장여비 20,000원을 중복하여 수령함.

❖ 【관련규정】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관련 예규 제11장

### ○ (예산·회계)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 준수

-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,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이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2012년 12월 구입한 소방장비 유류대금을 다음연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2015년 1월까지 총 11건 20,020,790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함.

❖ 【관련규정】 지방재정법 제6조, 제17조

### ○ (예방·민원)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 소홀

-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공공기관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, 0000는 2014년 7월중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, 2015년 1월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으며, 0000000은 2015.1.30.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.

❖ 【관련규정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, 시행규칙 제19조

### ○ (재난대응·안전) 동물용 마취제 구입 및 관리 부적정

- 구조 목적으로 동물용 마취제를 구입할 경우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동물병원 또는 동물약국에서 마취제를 구입 및 사용하여야 하고,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,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등록부 등 장부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 동물용 마취제를 의약품 허가 업체가 아닌 구조장비 판매 업체에서 구입하고, 구조일지와 동물마취제 사용대장 기록이 일치하지 않음.

❖ 【관련규정】 약사법 제58조,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제13조

## 수범 1 구급대원 학습 동아리(ROSC) 운영

### □ 추진개요

- 정기적인 학습을 통한 구급능력 향상 및 구급기술(노하우) 공유
- 친절대응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신뢰받는 소방이미지 확산
- 구급대원들 간 정보공유 및 친목 도모를 통한 유대감 강화

### □ 추진계획

- 추진시기 : 분기별(필요시 별도 모임)
- 참여대상 : 소속 구급대원 누구나
  - ※ 소방서 지도의사 참여, 피드백 및 정보 공유
- 학습 중점
  - 구급활동 중 특이사례 환자
  - 심정지 및 중증환자 이송 사례 등

### □ 추진실적 : 총 13회 176명 참석, 12건 토의 및 발표

- 구급품질서비스 향상 방안 및 과민성 환자 쇼크 방지사례 등 12건

### □ 기대효과

- 구급에 대한 정보 공유로 인한 현장 활동에 대한 노하우 향상
- 지도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구급대원들의 처치 능력 향상
- 고품질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



지도의사 피드백

사례 실습

토론 및 발표

토론 및 발표